

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1-59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1. 8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개정 사유

- 가. 「약사법 시행규칙」 개정으로 의약품유통관리기준 적격업소 지정 등에 관한 사무가 식약청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되고, 「약사법」 개정으로 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등에 관한 사무가 시·도지사에서 구청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우리 구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하여 이를 보건소장에 위임함으로써 주민편의 제공 및 행정능률을 제고하고자 함
- 나. 「약사법」, 「약사법 시행령」, 「약사법 시행규칙」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우리구 사무위임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 내용

가. 의약품유통관리기준 적격업소 지정 사무 (신설)

- 「약사법 시행규칙」 제59조제3항 별표5에 따른 의약품유통관리기준 적격업소 지정 등에 관한 사무가 식약청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되어 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

나. 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사무(신설)

- 「약사법」 제45조제1항 등에 따른 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등에 관한 사무가 시·도지사에서 구청장으로 변경되어 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

다.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관련규정 변경

- 「약사법」, 「약사법 시행령」, 「약사법 시행규칙」 전부개정으로 관련 법령 조문 정비

3. 관련 근거

- 가. 「약사법 시행규칙」 제59조제3항 별표5
- 나. 「약사법」 제45조제1항, 제45조제5항, 제69조~71조, 제74조, 제76조, 제77조, 제80조, 제81조, 제98조
- 다. 「약사법 시행규칙」 제100조

4. 참고사항

- 가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나. 합 의 : 합의사항 없음
- 다. 규제여부 : 해당사항 없음
- 라. 입법예고 : 2011. 7. 14~ 8. 3(제출된 의견 없음)
- 마. 붙임 : 1.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2. 신·구 조문 대비표 1부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의 보건소란 중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제15호와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주관국	사 무 명	근 거 법 령	수입기관
보 건 소	11. 약국에 관한 다음 사무 가. 약국개설 등록 및 등록된 사항 변경등록 나. 약국 폐업·휴업·재개 신고수리 다. 약국제제의 제조품목 신고 수리 라.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승인 마. 보고와 검사 등 바. 업무개시 명령 등 사. 폐기명령 등 아. 개수명령 자. 관리자등의 변경 명령 차. 등록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등, 그에 따른 청문 카. 약사감시원의 임명 및 직무 범위 타. 등록증 등의 갱신 및 재교부 파.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하.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, 그에 따른 이의제기 처리	○ 「약사법」 제20조제2항 ○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87조 ○ 같은 법 제22조 ○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○ 같은 법 제41조 ○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~제20조 ○ 같은 법 제23조제2항 ○ 같은 법 제69조 ○ 같은 법 제70조 ○ 같은 법 제71조 ○ 같은 법 제74조 ○ 같은 법 제75조 ○ 같은 법 제76조 및 제77조 ○ 같은 법 시행규칙 제96조 ○ 같은 법 제78조 ○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 ○ 같은 법 제80조 ○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 및 제100조 ○ 「약사법」 제81조 ○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○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 ○ 같은 법 제98조 ○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○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	보건소장

주관국	사 무 명	근 거 법 령	수임기관
보건소	<p>15. 의약품유통관리기준에 관한 다음 사무</p> <p>가. 의약품유통관리기준 적격 업소 지정</p> <p>나. 의약품유통관리기준 적격 업소 사후관리</p> <p>16. 의약품 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</p> <p>가. 의약품판매업의 허가 및 변경사항허가</p> <p>나. 의약품도매상 관리약사 신고수리</p> <p>다. 보고와 검사 등</p> <p>라. 업무개시 명령 등</p> <p>마. 폐기명령 등</p> <p>바. 개수명령</p> <p>사.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 등과 이에 따른 청문</p> <p>아. 허가증 등의 갱신</p> <p>자. 허가증 등의 재교부</p> <p>차. 과징금부과 및 징수</p> <p>카. 과태료부과 및 징수</p>	<p><신설></p> <p>○ 「약사법 시행규칙」 제59조 제3항 별표5</p> <p>○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3항 별표5</p> <p><신설></p> <p>○ 「약사법」 제45조제1항</p> <p>○ 같은 법 제45조제5항</p> <p>○ 같은 법 제69조</p> <p>○ 같은 법 제70조</p> <p>○ 같은 법 제71조</p> <p>○ 같은 법 제74조</p> <p>○ 같은 법 제76조 및 제77조</p> <p>○ 같은 법 제80조</p> <p>○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</p> <p>○ 같은 법 제81조</p> <p>○ 같은 법 제98조</p>	보건소장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			개 정 안			
【별표】 위임사무				【별표】 위임사무			
주관국	사무명	근거법령	수입 기관	주관국	사무명	근거법령	수입 기관
보건소	11. (생략) 가.(생략) 나.(생략) 다.(생략) 라.(생략) 마.(생략) 바.(생략) 사.(생략) 아.(생략) 자.(생략) 차.(생략) 카.(생략) 타.(생략) 파.(생략)	○ 약사법 제16조 ○ 동법시행규칙 제8조 및 제9조 ○ 동법 제20조 ○ 동법시행규칙 제84조 ○ 동법 제33조 ○ 동법시행규칙 제15조~제19조 ○ 동법 제41조 ○ 동법 제64조 ○ 동법 제64조의2 ○ 동법 제65조 ○ 동법 제67조 ○ 동법 제68조 ○ 동법 제69조 및 제69조의2 ○ 동법시행규칙 제89조 ○ 동법 제70조제2항 ○ 동법시행규칙 제88조 ○ 동법 제71조의2 ○ 동법시행규칙 제93조 ○ 약사법 제71조의3 ○ 동법시행령 제30조 ○ 동법시행규칙 제91조	보건 소장	보건소	11. 약국에 관한 다 음 사무 가. 약국개설 등록 및 등록된 사항 변 경등록 나. 약국 폐업·휴 업·재개 신고 수리 다. 약국제제의 제 조품목 신고 수리 라.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승인 마. 보고와 검사 등 바. 업무개시 명령등 사. 폐기명령 등 아. 개수명령 자. 관리자등의 변경 명령 차. 등록등의 취소와 업무정지등, 그에 따른 청문 카. 약사감시원의 임명 및 직무범위 타. 등록증 등의 갱 신 및 재교부 파.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	○ 「약사법」 제20조 제2항 ○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87조 ○ 같은 법 제22조 ○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○ 같은 법 제41조 ○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~제20조 ○ 같은 법 제23조 제2항 ○ 같은 법 제69조 ○ 같은 법 제70조 ○ 같은 법 제71조 ○ 같은 법 제74조 ○ 같은 법 제75조 ○ 같은 법 제76조 및 제77조 ○ 같은 법 시행규칙 제96조 ○ 같은 법 제78조 ○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 ○ 같은 법 제80조 ○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 및 제100조 ○ 「약사법」 제81조 ○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○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	보건 소장

현행				개정안			
【별표】 위임사무				【별표】 위임사무			
주관국	사무명	근거법령	수입기관	주관국	사무명	근거법령	수입기관
보건소	하.(생략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동법 제79조 ○ 동법시행령 제31조 ○ 동법시행규칙 제91조 		보건소	하.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, 그에 따른 이의 제기 처리 15. <u>의약품유통관리 기준에 관한 다</u> <u>음 사무</u> 가. <u>의약품유통관리 기준 적격업소 지정</u> 나. <u>의약품유통관리 기준적격업소 사</u> <u>후관리</u> 16. <u>의약품 판매업에</u> <u>관한 다음의 사무</u> 가. <u>의약품판매업의</u> <u>허가 및 변경사</u> <u>항허가</u> 나. <u>의약품도매상</u> <u>관리약사 신고수리</u> 다. <u>보고와 검사 등</u> 라. <u>업무개시 명령 등</u> 마. <u>폐기명령 등</u> 바. <u>개수명령</u> 사. <u>허가취소 및 업</u> <u>무정지 등과 이</u> <u>에 따른 청문</u> 아. <u>허가증 등의 갱신</u> 자. <u>허가증 등의 재</u> <u>교부</u> 차. <u>과징금부과 및 징수</u> 카. <u>과태료부과 및 징수</u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같은 법 제98조 ○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○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 ○ 「약사법 시행규칙」 제59조제3항 별표5 ○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3항 별표5 ○ 「약사법」 제45조제1항 ○ 같은 법 제45조 제5항 ○ 같은 법 제69조 ○ 같은 법 제70조 ○ 같은 법 제71조 ○ 같은 법 제74조 ○ 같은 법 제76조 및 제77조 ○ 같은 법 제80조 ○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 ○ 같은 법 제81조 ○ 같은 법 제98조 	보건소장
	<신설>		보건소장				보건소장